

대법원, 한국GM 사내하청노동자 근로자 지위 인정 소송 10년 만에 결론 ... 금속노조 “완성차 불법파견 중단해야”

한국지엠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의 불법파견 사용을 제기하며 시작한 법정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한 지 20년, 소송 10년 만이다.

대법원은 25일 한국지엠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청이 사내 하청노동자들을 장기간 직접 지휘·감독을 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직접 고용 의무를 져야 한다는 취지다.

최종 승소한 노동자들은 한국지엠 1차, 2차 사내 하청업체 소속이다. 서열·보급·방청·포장 등 간접 생산 공정에서 일한 사람들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간접 생산 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도 한국지엠 사업장에 파견돼 한국지엠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았다”라고 판단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인천지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2005년 1월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내며 본격적인 직접 고용 쟁취 투쟁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

자들 문제 제기를 받아들였으나, 원청은 무시했다.

노동부가 한국지엠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를 고발했고 2013년 대법원이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때도 원청은 정규직 전환에 나서지 않았다. 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2015년부터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기 시작했다.



노조 경남지부와 인천지부 두 곳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성도 경남지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근로자 지위를 받는데 10년 넘게 걸렸다. 오늘 승소한 조합원 대부분 해고자인데, 긴 해고 시간 함께 버

텨줘 고맙다”라며 울먹였다.

배성도 비대위원장은 “오늘 대법원 판단은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현장으로 돌아가 당당하게 일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2차 하청업체 노동자 일부에 대해 한국지엠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2차 하청업체에서 간접 생산 공정 업무를 해왔다. 범퍼 완제품을 조립공장 생산라인에 서열·보급하는 일이다. 1심은 불법파견을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청의 직접 지휘·명령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대법원도 받아들인 것.

황호인 인천지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장은 “여기 서 있는 노동자들 모두 한국지엠 원청의 지시를 받아 한국지엠 차를 만드는 한국지엠 노동자”라며 “오늘 대법원이 자본의 기준대로 직접 공정, 간접 공정, 1차 업체, 2차 업체 구분을 짓고 결국 일관성 없는 판결을 내렸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분노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원청 직접고용 노동자로 현장에 돌아간다

대법원, 현대차 아산공장 '불법파견' 인정... “20년이 넘는 싸움 노동자가 이겼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에서 10년 만에 승소를 거머쥔다.

25일 대법원은 10년 만에 현대자동차 아산, 울산공장 불법파견 사건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었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물류(지게차)에서도 불법파견이 인정됐다.

재판에서 승소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 직접 고용 노동자로 현장에 돌아간다. 금속노조는 이번 승소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년 넘게 ‘차별 철폐’ 투쟁으로 끌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없었다면 완성차 자본의 불법파견 범죄 행위도 법의 판단을 묻지 못했을 것이란 의미다.

금속노조는 선고 직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허원 부위원장은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라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인내하며 투쟁해온 우리 현대차 아산, 울산공장 동지들 잘 버텼다” 라며 축하의 인사말을 전했다.

허 부위원장은 “현대차 현장에는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넘

쳐난다” 라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차별하지 않고 현대차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백명일 노조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지회장은 “2015년 1월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거머쥔 승소다” 라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법원의 늦장 판결로 인해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과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라고 꼬집었다.

백명일 지회장은 “법원의 늦장 판결은 심각한 문제다. 사법부는 더 이상 노동자들의 삶을 망가뜨리지 말고, 조속히 옳은 판결을 내려라” 고 촉구했다.

유태영 새날법률원 변호사는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직접 생산 공정인 차체 도장, 의장 그리고 출고 물류에 이르기까지 모두 원청 사업자인 현대차가 지휘명령했던

근로자 파견 관계였음이 다시 한번 대법원에서 확인됐다” 라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유태영 변호사는 “법원과 정부는 오늘 대법원에서 확인한 원청 사업주의 실질적인 지배력에 대한 책임과 원청 사업주의 교섭에 대한 책임을 노조법 개정으로 답하라” 라고 강조했다.

과제는 남아 있다. 현대자동차 수출선적 중 부두 이송 노동자는 불법파견을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이 라인부터 부두 이송까지 하나의 연결된 공정으로 볼 수 없다는 자본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금속노조는 “이것은 새로운 차별로 ‘노동의 분절’ 을 대법원이 부추긴 것과 다르지 않다” 라면서 “대법원이 배제한 노동자와 함께 끝까지 차별 철폐를 외치고, 이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겠다” 라고 결의를 밝혔다.

